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3호서식] <개정 2020. 8. 5.>

○○ 보호관찰심사위원회(치료감호심의위원회)

※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수 신 ○○ 보호관찰소장

발 신 ○○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
(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) 직인

제 목 :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

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[ ]제22조제4항, [ ]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부 착 대상자	성 명	
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
	석방 후 거주예정지	
보호관찰 기간		
부착 기간		
특별 준수사항		
석방예정 일시		
첨 부 결정서 등본 1부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